

※ 주의: 해당 내용은 '22.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보완중이므로 추후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 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2022. 1.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목차

1 고용보험 적용 1

1. 적용 직종('22.1월~)
2. 적용 대상
 - 2-1. 연령 기준
 - 2-2. 소득 기준
 - 2-3. 소득합산 제도('22.1.1. 시행)

2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8

1. 보험사무관리 주체
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3-1. 일반노무제공자
 - 3-2. 단기노무제공자
 - 3-3. 플랫폼종사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4-1. 일반노무제공자
 - 4-2. 단기노무제공자
5.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6. 자료의 수집·관리

3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23

1. 고용보험료 산정
2.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플랫폼사업자 지도·감독 등

[참고1]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세부절차

[참고2] 매월 보험료 확인 방법(사업장 또는 플랫폼종사자)

4 구직급여

33

1. 수급요건

1-1. 일반노무제공자

1-2. 단기노무제공자

[참고]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2. 대기기간

3. 지급수준

5 출산전후급여

40

1. 수급요건

2.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6 관련 지원제도

43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2.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

1

고용보험 적용(일반)

1

적용 직종('22.1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참고: '21.7.1. 고용보험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22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고) 직종은

주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① 퀵서비스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2호)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화물차주)

②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3호)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

적용 대상

◆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계약(1개월 이상)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2-1. 연령 기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원칙

-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적용

□ 예외

- ① 65세 전부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플랫폼 기반 직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22.1.1.)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적용
- ②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 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유지되는 한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 65세 이후에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 예시

- 시행일 이후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적용제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 **피보험자격 유지 (계약단절 없을 경우)**



- 시행일 기준 65세 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65세 초과, 적용제외소득미만 감소로 상실 후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 → **재취득(적용대상)**



2-2. 소득 기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 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6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원칙

- 노무제공계약(1개월 이상)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에 한하여 적용

□ 월보수액

- '월보수액*'이란 노무제공계약 대가로 발생하는 금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의 구별기준

- "일반노무제공자"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
→ 일반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단기노무제공자"란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 (예시: 공유콜을 수행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2-3. 소득합산 제도('21.1.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6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③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소득합산 대상

- (개요) '22.1.1.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중복된 용역기간 중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 (적용기준) 노무제공자가 신청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
 - 따라서, 합산이 가능한 노무제공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 대해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예시

- A 사업장 1월 월보수액 40만원, B사업장 1월 월보수액 50만원인 경우 중복 기간(1.1.~1.31.) 중 합산 월보수액은 90만원인 경우
 -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A, B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
 - 만일, C사업장 1월 월보수액 1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자가 C 사업장에 대해 신청하지 않는다면 C사업장은 제외

① 소득기준을 충족(월 보수액 80만원 이상)하는 노무제공계약과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2호)

* 예시

- A사업장 1월 월보수액 100만원, B사업장 1월 월보수액 20만원인 경우 중복 기간(1.1.~1.31.) 중 합산 월보수액 120만원
⇒ A사업장은 당연적용, B사업장은 신청하더라도 미적용

②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도중 하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될 경우,

- 소득합산은 종료되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 제공계약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 (소득합산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구분 없이 월보수액 합산신청 가능
 - 기준보수 적용대상 직종인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는 신청 대상 직종에서 제외
 - *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대상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80만원 미만 일반 노무제공계약과는 합산 신청이 불가
 - 노무제공계약이 아닌 근로자(근로계약) 혹은 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합산신청 불가
 - * 다만, 타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라도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월보수액 합산 신청 가능
 - ** 예술인의 경우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합산 신청 가능
- (합산 시점) 고용보험 적용 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월(발생월) 기준으로 합산 및 고용보험 적용
 - * 다만, 보험설계사 등 소득 귀속월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수가 여러 월에 걸쳐 지급되는 등 특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소득 지급월 기준으로 합산
- (신청기한)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3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
 - * 기한을 넘겨 소득합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 피보험자격 취득불가
- 전월 보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매월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하여 피보험자격 유지

② 취득 및 상실

- (산정 기준) 노무제공자에게 유리한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종료)일을 취득(이직)일로 함

* 계약건별 개시(종료)일이 다르더라도, 개시(종료)일에 따른 소득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월단위 소득 기준으로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지 판단

- (취득일)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제공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
- (상실일)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제공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

* 예시

- (예시 1) 노무제공자가 22.3.5.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계약기간	1월	2월	...	4월	5월	6월
A	'22.1.12~' 22.5.11.	1.12. <60만원>	2월 <60만원>	...		5.11. <60만원>	
B	'22.2.10~' 22.6.7.		2.10 <30만원>	...		5월 <30만원>	6.7 <30만원>

- ① 취득일: 노무제공자는 2.1.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2.1.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2.10.
- ② 상실일: 노무제공자는 6.1.부터 피보험자격 상실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5.11.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6.1.

- (예시 2) 노무제공자가 2.10.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1월	2월	3월	...	10월	11월
A	1.10. <50만원>				10.10. <40만원>	
B	1.15. <40만원>				<60만원> 10.20.	

- ① 취득일: 노무제공자는 1.10.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1.10.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1.15.
- ② 상실일: 노무제공자는 10.21.부터 피보험자격 상실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10.11.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10.21.

③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지원

- (월보수액)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특정 사업주와의 계약건별 월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됨
 -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직종별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월보수액 산정 기준) 소득합산을 신청한 첫 달은 합산신청에 따른 조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결과에 따라 월보수액을 산정
 - * 소득합산 신청 결과를 신청 노무제공자 및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월보수액을 직권으로 통보 처리
- 그 다음달부터는 일반적인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산정 절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통보한 보수액을 합산하여 월보수액을 산정
 - * 합산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종료
-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에 대해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에서 통보한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별보험료 부과
 - 다만, 합산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보수(월 133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지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업에서 법정통보기간 내 월보수액을 통보할 경우 지원
 - * 다만, 소득합산을 신청한 첫 달은 합산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월보수액 통보를 직권으로 처리하므로, 사업에서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월보수액 통보서가 재접수되어 합산 월보수액이 두루누리 지원 보수기준 이상이 되거나, 8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취득취소 처리 될 경우에는 해당월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2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 ◆ “노무제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 “플랫폼 기반 종사자(노무제공자)(이하 ‘플랫폼종사자’)”란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①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②해당 사업주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보험사무관리 주체

- 원칙(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 “사업주”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납부 등 보험사무 이행의 주체
- 특례(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
 -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 이용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 이행의 주체
 - *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있으며,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만 이행

□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안)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법 제48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함(별지 제2호의2 서식)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별지 제4호의2 서식)
- 한편,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
-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1조(제48조의3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이용사업개시·종료신고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안)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3. (생략)

시행규칙 제16조의9(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계약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이용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사무 의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①**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별지 제22호의19서식) 및 ②**이용사업개시 신고**(별지 제22호의20서식)를 하여야 함

-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

- 플랫폼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용사업종료신고**(별지 제22호의21)를 하여야 함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멸신고**를 하여야 함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3-1.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취득·상실신고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매월 월보수액 통보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 플랫폼종사자의 소득변동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반복하여 하여야 하는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변동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처리

□ 과태료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변경신고 및 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①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 (변경신고)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별지 제19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4항 및 제11조)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플랫폼종사자는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와 노무제공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4항 및 제12조)
- 확인청구는 ①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되거나, ②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③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

3-2.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신고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취득·상실 신고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과태료

- 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 변경신고 및 확인청구

- 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3-3. 플랫폼종사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플랫폼종사자가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신고(별지 제10호서식) 가능
- *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예시: 각종 위·수탁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플랫폼 기반의 노무제공자) 계약 관련 App 출력 자료 등)

4

신고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4-1.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피보험자격의 취득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 플랫폼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22.1.1.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월보수액 80만원 이상)하고 있는 경우, 플랫폼 기반 종사자(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22.1.1.에 피보험자격 취득
 - 피보험자격 취득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월의 초일'에 피보험자격 (재)취득

□ 피보험자격의 상실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계약 종료로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상실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동법 제77조의10 준용)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 피보험자격 상실월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에 피보험자격 상실

* 예시

- 노무제공자가 '21.1.1.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고 매월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2.15
 - ☞ 피보험자격 취득일: 고용보험 시행일인 '22.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22.2.1.~4.30.이고 2월 보수액이 70만원, 3월 보수액이 100만원, 4월 보수액이 90만원인 경우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15.
 - ☞ 월보수액 신고: (2월) ~3.31. (3월) ~4.30. (4월) ~5.31.
 - ☞ 피보험자격 취득일: 3.1. (2월은 80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 3월은 80만원 이상 이므로 80만원 이상이 발생한 3.1.에 피보험자격 취득)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5.31.
 - ☞ 피보험자격 상실일: 5.1. (계약종료일인 4.30일의 다음날)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22.3.1.~6.20.이고 3월 보수액이 100만원, 4월 보수액이 40만원, 5월 보수액이 80만원, 6월 보수액이 60만원인 경우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4.15.
 - ☞ 월보수액 신고: (3월) ~4.30. (4월) ~5.31. (6월) ~7.31.
 -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3.1. 취득하고 4.1에 상실, 5.1에 재취득했다가 6.1에 상실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7.15 (노무제공계약기간 내 소득변동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 취득·상실 처리)

4-2.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준용)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 기간 중 노무제공일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⑥ 법 제 77조의9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 피보험자격의 취득

- 노무를 제공한 날(노무제공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22일 = 주당 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 참고 >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 일(日) 산정기준

-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한 '일(日)'은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
 - 상기 일(日) 산정기준에 따라 플랫폼종사자가 “노무제공을 완료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신고

* (예시) 플랫폼종사자 A가 1.15. 오후 11:30에 노무제공을 시작하여 1.16. 오전 00:30에 노무제공을 완료한 경우 → 1.15. 기준으로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이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 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④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근로자로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2)

-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또는 예술인)로 동시에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의 관계**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취득 또는 유지 가능

이중취득의 효과

-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그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시 보수총액이 커짐에 따라 기초일액도 증가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주소
2.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⑤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
2.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3.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4.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5.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정보·자료의 제공 범위

- 플랫폼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①플랫폼이용 계약 개시일·종료일, ②사업장 관련 정보¹⁾, ③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정보²⁾를 제공하여야 함(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3제4항, 제5항)

1)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 노무제공자 이름·직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노무제공 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 정보·자료의 보관

-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관련 정보, 노무 제공계약 관련 자료 등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노무 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함

□ 과태료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자료 또는 정보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3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징수

1

고용보험료 산정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 보험료")는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안)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 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료 산정

- 플랫폼종사자의 월평균보수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1.4%,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 부담)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고용보험료의 하한액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133만원) 기준으로 부과된 고용보험료가 사실상 하한액임
 - * 기준보수 기준으로 부과된 고용보험료 18,620원(사업주, 노무제공자 각각 9,310원)
-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고시 제2021-50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 (월별) 상한액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 고용보험료율

-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료율은 1.4%이며,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씩 균등 부담
 - * 실업급여 계정사업 중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사업만 적용(육아휴직급여 사업 미적용)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보험료율(1.6%)와 달리 적용
 - ** 노무제공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지 않음

□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액

-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액)은 노무제공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제5호),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예시) >

-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제2호)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경비」 산정방법은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22.1월)
 - * (국세청 기준경비율) ① 퀵서비스기사: 30.4% ② 대리운전기사: 21.4%

□ 월평균보수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플랫폼종사자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
 - * 다만,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함
- 플랫폼종사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액을 합산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

□ 기준보수

보험료징수법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에 대한 월단위 기준보수는 133만원으로 설정(고시 제2021-52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 월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 *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월단위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월보수액이 적으므로 기준보수 기준(133만원)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

<참고: 기준보수 적용 사유(보험료징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조사에 의한 산정 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2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안)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 부과

- (일반노무제공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월보수액 통보
(별지 제22호의12서식)
 - 통보된 월보수액 기준으로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다음달까지 보험료 산정, 부과
- (단기노무제공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를 제출
 - 신고된 노무제공대가 기준으로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험료 산정, 부과

□ 고용보험료 납부

-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및 플랫폼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 사업주 및 플랫폼종사자가 노무제공대가의 배분·정산 등을 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예치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된 금원에서 원천공제
-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플랫폼종사자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확인을 원할 경우 '고용산재토달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33p, 참고2)

3

플랫폼사업자 지도·감독 등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4조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른 요구를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

-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플랫폼사업자의 보험료 원천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플랫폼사업자의 사무소에 직접 소속 직원을 보내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한 질문 및 서류 조사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 플랫폼사업자가 ①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공단의 조사시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참고1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세부절차

	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보험관계 신고 (성립·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사업주가 근로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플랫폼 사업자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용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 별도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퇴사 시)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color: red; font-weight: bold;">이중취득 금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장 판단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제공계약 시)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 계약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color: blue; font-weight: bold;">이중취득 허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 각각 모두 취득 ② 노무제공자-근로자(예술인) → 노무제공자-근로자(예술인) 각각 이중취득 ③ 노무제공자-자영업자 → 원칙적 금지,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
보험료 산정 및 부과	<p><(월)보험료산정> $\text{월평균보수} \times \text{보험료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매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보험료 원천공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color: purple; font-weight: bold;">부과과정(예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근로자 입사 → 2.15.(기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2.15~18일경 보험료 산정.부과 → 2.22일경 보험료 고지(3.10.납기) 	<p><(월)보험료산정> $\text{월보수액} \times \text{보험료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플랫폼 사업자가 매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전월)월보수액 신고 •매월 노무제공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매월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color: purple; font-weight: bold;">부과과정(예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 2.28.(기한) 월보수액 신고(1월분) → 3.15~18일경 (1월분)보험료 산정.부과 → 3.22일경 보험료 고지(4.10.납기)

참고2

매월 보험료 확인 방법(사업장 또는 플랫폼종사자)

※ (조회 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내

☞ **사업주 확인 방법: '사업장'으로 로그인 > 사업장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조회**

☞ **노무제공자 확인 방법: '개인' 로그인 > 빠른서비스 중 개인별보험료부과고지조회**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구분	(산재) 채용일	(산재) 퇴사일	(산재) 전근일	(고용) 채용일	(고용) 퇴사일	(고용) 전근일
[Redacted]	[Redacted]	일반	2013-01-07	-	-	2013-01-07	-	-

■ 근로자 부과정보

		산정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경감액		사회보	
보험월	(실금) 산정보수액	(고직) 산정보수액	월평균 보수	근무일수	(실금) 근로자 보험료	(실금) 사업주 보험료	(고직) 사업주 보험료	(실금) 경감액	(고직) 경감액	(실금) 근로자 지원금	(실금) 사업주 지원	
1월	3,362,561	3,362,561	3,362,561	31	26,900	26,900	28,580	0	0	0	0	
2월	3,362,561	3,362,561	3,362,561	29	26,900	26,900	28,580	0	0	0	0	
3월	3,362,561	3,362,561	3,362,561	31	26,900	26,900	28,580	0	0	0	0	
4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0	
5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0	
6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0	
7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0	
8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0	
9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0	
10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0	
11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0	
12월												
합계	39,505,531	39,505,531	39,505,531	335	315,980	315,980	335,740	0	0	0	0	
정산차액												

4

구직급여

1

수급요건

1-1.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 (수급요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필요
- 다수 고용형태에서 종사한 사람이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로서 최소 피보험자격 3개월(이직 전 24개월 중) 필요**
-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둘 이상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하였을 경우
→ $0.25(1-9 \div 12) \leq 0.5(90 \div 180)$ 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하였을 경우
→ $0.67(1-4 \div 12) \leq 0.67(120 \div 180) + 0.44(4 \div 9)$ 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산정방식)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하나의 고용형태로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고용형태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 i) 근로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 ii) 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 iii)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6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산정](#)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3개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5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14개월 산정](#)

2 이직사유

-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 39p, 「참고」 참조

-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아래 기준 <1> 또는 <2-①, 2-② 모두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 <2>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②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 전년도에 이직당시 동일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적용

1-2.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 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1 피보험 단위기간

- (수급요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필요(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 (산정방식) 월 기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22일 = 주당 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 참고 >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2 이직사유

- 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고용보험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 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예시>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등

2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 단,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소득감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5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액

- (기초일액)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다만, 산정한 금액이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일 경우 가장 적은 기준보수 일액이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60을 곱한 금액 해당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4항)
- (구직급여 감액기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인 피보험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중지 또는 감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

구직급여 감액기준

- **(지급중지[전액감액])** ①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노무제공자·예술인 종사
 ②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구직급여 지급 중지
- **(감액기준)**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감액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 소정급여일수

-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적용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출산전후급여

1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①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충족 필요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 기준

-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총족
-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일 직전 1년) 출산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월평균 보수) 노무제공자 및 근로자로서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합산

○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은 임신기간별 상이*

*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차등 부여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7

관련 지원제도

1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지원대상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사업규모)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플랫폼종사자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플랫폼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방식

- (기존 성립사업장)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또는)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신규 성립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② (보수수준)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30만원 미만일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플랫폼 사업자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③ (지원 제한)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재산은 전년도 「지방세법」 과세표준액 자료(행안부) 활용

↳ 재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소득은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전전년도 소득자료(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 소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국세청 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른 적용 예시

- 근로소득자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자료는 매년 11월에 입수
 - 가장 최근에 입수한 소득자료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 판단
- ① 1~10월: 전전년도 종합소득
 - ② 11~12월: 전년도 종합소득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①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②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18.1.1부터 최대 36개월

*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각각 36개월 지원

③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근로자·노무제공자 이중취득 시 지원기준 사례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각각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지원, 노무제공자 미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미지원**

□ 지원절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플랫폼종사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료 지원신청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 지원금 신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2) 서식

- (지원결정)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사업장 규모,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월별 지원금 산정

* 다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포함) 및 월보수액 통보서 제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한편,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가 둘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1회 지원신청으로 모든 보험료 지원금 지급

* 가령, 노무제공자(사업주)가 3개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5개의 사업주(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지원신청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노무제공계약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노무제공자·사업주	공단	공단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2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

- (사업목적)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아닌 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사무 이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 제도시행 초기 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사무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용보험 성실 신고 유인을 제공
 - * 따라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사업주는 아니나 고용보험 관련 신고 의무가 부여된 플랫폼사업자
- (지원내용) 법정 기한 내 고용보험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플랫폼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각 1건당 1,000원(분기별 노무제공자 1인당 총 6건(일반+단기) 인정)
 - * (일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사유가 있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3 ①),
월보수액 통보: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⑤)
 -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3 ②)
 -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플랫폼사업자가 분기에 부과된 월 고용보험료를 각각 납부고지 기한 내(매월 10일) 납부한 경우 동일 분기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1인당 2,000원
 - * 법정 납부기한 내 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한 납부비율이 95% 이상일 경우 완납으로 판단

□ (지원상한) 한 개 업체에 분기당 지급될 수 있는 보험사무 지원금 상한액 56백만원*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포함)

* '22년 연 최대 168백만원, 분기별 최대 지원금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7천명까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실제 신고 실적, 지원금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도 내 상한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분기 마지막 15일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15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 1분기(1,2,3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6월 15일부터 1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2분기(4,5,6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9월 15일부터 2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3분기(7,8,9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12월 10일 이후 3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4분기(10,11,12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내년 3월 15일부터 4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신청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www. total.comwel.or.kr](http://www.total.comwel.or.kr))를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